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16 선고 2020나12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16 선고 2020나1200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7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2021. 5. 14.

판결 선고2021. 7. 16.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74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1.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¹⁾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2017. 2. 27., 2017. 4. 10., 2017. 4. 18., 각 3,000,000원, 10,000,000원,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라 한다). 이에 관한 각 차용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차용액 금 삼백만원정

상가 본인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2017년 2월 27.일자로 일금()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에 서명 날인 하며 채권자에게 제출²⁾ 한다.

변제일 2017년 6월 6.일

채무자 A 날인

차용증

차용액 금 일천만원정

상가 본인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2017년 4월 10.일자로 일금()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에 서명 날인 하며
채권자에게 제출한다.

변제일 2017년 9월 18.일

채무자 A 날인

차용증

차용액 금 이천만원정

상가 본인은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2017년 4월 18.일자로 일금() 원정을 차용함에 있어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에 서명 날인 하며
채권자에게 제출한다.

변제일 2017년 4월 30.일

채무자 A 날인

나. 한편, 원고는 2017. 2. 27.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 기재와 같이 D, E, F, G, H, I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수백 번에 걸쳐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돈거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7.부터 2019. 2. 13.까지 피고로부터 수백 번에 걸쳐 합계

3,574,05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원리금으로 합계

3,729,5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차용금 원금 3,574,0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13,954,958원을 초과한 나머지 141,545,042원(=

3,729,550,000원 - 3,574,050,000원 - 13,954,958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 중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는 인정하나, 피고가 원고와 2017. 2. 27.부터 2019. 2. 13.까지 한 수백 번의 돈거래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것으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돈거래는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는 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등 참조).

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대여 당시 제한최고이자율은 연 25%인데,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다9968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60838 판결 등 참조).

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자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얽매일 것은 아니고, 그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와 같이 이 사건 돈거래 과정에서 많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돈거래는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의 기재와 갑 제4,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일수'(순번 181번 2017. 5. 30., 순번 476번 2017. 8. 28.경, 순번 484번 2017. 9. 2.경, 순번 583번 2017. 12. 17.경, 순번 751번 2018. 2. 14., 순번 759번 2018. 2. 22., 순번 792번 2018. 3. 12., 순번 801번 2018. 3. 18., 순번 810번 2018. 3. 23., 순번 816번 2018. 3. 24., 순번 822번 2018. 3. 29., 순번 835번 2018. 4. 4.), '이자'(순번 134번 2017. 5. 24., 순번 181번 2017. 5. 30., 순번 429번 2017. 8. 6., 순번 469번 2017. 8. 26., 순번 648번 2018. 1. 10., 순번 698번 2018. 1. 23., 순번 708번 2018. 1. 27., 순번 831번 2018. 4. 2., 순번 866번 2018. 5. 2., 순번 868번 2018. 5. 2.)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피고도 '이자'(순번 468번 2017. 8. 25.)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돈거래에 관하여 정리한 노트 등에 '70선', '선70', '선300' 등과 같이 선이자임을 나타내는 단어, '10일에 130씩', '500짜리 100씩 넣는 거 4회 차 입금', '10회' 등과 같이 차용한 돈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의 원리금을 일정한 기간에 갚는 방식의 일수를 암시하는 단어, '매일 다시주는 급전', '급전' 등과 같이 금전소비대차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2) 이 사건 돈거래의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³⁾,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입금한 간격이 짧은 경우는 같은 날 또는 하루나 이틀 후, 길어도 며칠 이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과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의 액수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한 액수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2017. 11. 14.부터 2018. 1.경까지의 대부분의 돈거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의 매일 돈거래가 이루어졌다. 중간 중간 금액이 다소 변동되거나, 백만 원, 십만 원 단위의 돈을 추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적도 있긴 하나, 큰 형식은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된 돈에서 약 1,000만 원 적은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650,000원, 1,000,000원, 1,300,000원 등의 정액을 입금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피고는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 순번 591번 기재와 같이 2017. 12. 22. '650,000원이 입금 안 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정액의 이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백 번에 걸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초기 3번 이외에는 차용증 등 객관적 서류를 만들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당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자, 일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액수의 규모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는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돈거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나 일수의 방식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중에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불특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피고가 그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원고가 'C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깡' 업무를 인수받아 이를 자신이 하게 되었다면서 돈을 대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투자하고 수익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를 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 사건 돈거래 중 어떤 것이 투자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였는지, 투자수익금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받기로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위의 문자들 중 명시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찾기 어렵다. 대부업을 하는 피고가 원금 회수 여부 및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투자를 위해, 명확하게 어떤 투자인지, 수익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투자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만들지 않은 채 투자 명목의 돈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명칭이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수익금이라는 명칭이나 그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사업 성패에 따른 위험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전혀 감수하지 않은 채 투자수익금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돈거래는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지급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판단

1)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액을 판단함에 앞서 원고가 J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이 이 사건 돈거래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원고와 피고는, D, E, F, G, H, I 명의 계좌에 피고가 송금하고, 원고는 D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제3자 명의를 통한 금전거래로 이 사건 돈거래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동생인 J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돈거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J 계좌에 돈을 입금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J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피고에게 이 같은 문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원고와 피고는 J 외에도 다수의 제3자 명의로 금전거래를 해왔던바 J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 역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돈거래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부당이득금 산출내역표)의 변제충당 계산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1,545,042원(=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돈 3,729,550,000원 - 차용한 원금 3,574,050,000원 - 차용한 원금의 이자 13,954,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돈 중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4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 이후 연 12%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종훈

판사서여정

별지

제출한 후 2019. 11. 28.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1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설행한다.

2) "체출"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출"의 명백한 오타로 보이므로 수정하였다(이하 각 차용증 부분도 같다).

3) 별지 '이 사건 돈거래와 주요 문자메시지의 명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다.